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7) 상정
-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7) 수정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)

가. 제안이유

-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추진 중인 문화시설을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복합 시설물로 명시하고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문화시설 건립으로 변경함.(안 제1조)
- 문화시설을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로 정의 함.
(안 제2조, 신설)
- 적용범위를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01 -2
번지 일원 등)로 결정 고시된 사업으로 한정함.
(안 제3조,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특별회계 사업은 특정한 사업을 특정세출로 충당하여 특정기간 동안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가 되는데 동 조례의 부칙 제2조에는 준공검사 후 3개월 까지로 불특정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?</p>	<p>○ 현행 조례의 제정시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, 당초의 취지와 같이 5년간 연장하여 회계 계리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.</p> <p>- 유효기간 : 2014년 12월 31일까지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함에 동의코자 함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449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안년월일 : 2009. 9. 7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
까지로 유효기간을 두는 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
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
로서 본 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음을
고려하여,
- 불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당초 취지와 같이 5년간
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 회계의
계리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‘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
까지’라는 기간을 당초 취지와 같이 5년간 연장하는 ‘2014년 12월
31일까지’로 함.
(부칙 제2조)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“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까지” 를
“2014년 12월 31일까지” 로 수정한다.
(부칙 제2조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특별회계설치 조례</u></p> <p>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 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특별회계설치 조례</u></p> <p>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제2조(유효기간) ----- 는 <u>문화시설 준공검사</u> <u>3개월까지</u> -----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제2조(유효기간) ----- 는 <u>2014년 12월 31일</u> <u>까지</u> -----</p>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”를 “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“문화예술회관 건립”을 “문화시설 건립”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“문화시설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1. 문화시설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01-2번지 일원
2. 도로: 소로3류 659호선

제4조(현행 제2조) 중 “문화예술회관”을 “문화시설”로 하고, 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”를 “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6조(현행 제4조) 중 “문화예술회관”을 “문화시설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를 “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”를 “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“문화예술회관 건립”을 “문화시설 건립”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“문화시설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1. 문화시설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01-2번지 일원
2. 도 로: 소로3류 659호선

제4조(현행 제2조) 중 “문화예술회관”을 “문화시설”로 하고, “부천

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”를 “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”
로 한다.

제6조(현행 제4조) 중 “문화예술회관”을 “문화시설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